

의안번호	제 340 호
의 결 연 월 일	2012년 6월 일 (제 311 회)

충청북도학사 설치 및 운영위탁에 관한 조례
일부개정조례안

제 출 자	충 청 북 도 지 사
제출연월일	2012년 6월 4일

법무통계담당관 심사를 마침

충청북도학사 설치 및 운영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340
----------	-----

제출연월일 : 2012년 6월 4일
제출자 : 충청북도지사

1. 제안사유

- 현재 운영하고 있는 충북도 장학시설 '청람재'와 대통령 별장인 '청남대'의 시설물 명칭 유사성으로 인한 도민의 불편을 줄이고자 시설명칭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임

2. 주요내용

- 청람재의 시설명칭 변경
 - (당초) 청람재 ⇒ (변경) 충북학사 청람재
- 현실 불부합 조문 정비

3. 의안전문 : 불 임

4. 신·구조문 대비표 : 불 임

5. 관계법령 발취 : 불 임

6. 비용추계서 : 해당없음

충청북도조례 제 호

충청북도학사 설치 및 운영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충청북도학사 설치 및 운영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조 중 “청람재(이하 “학사“라 한다)”를 “충북학사 청람재”로 한다.

제2조 중 “청람재”를 “충북학사 청람재(이하 “학사“라 한다)”로 한다.

제3조제3호 중 “기타”를 “그 밖에”로 한다.

제6조제4항 중 “규정에 의한”을 “규정에 따른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5항 중 “제2항 내지 제4항을”를 “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”로 한다.

제7조제4호 중 “기타”를 “그 밖에”로 한다.

제8조제2항 중 “제1항의 규정에 의한”을 “제1항에 따른”으로 한다.

제9조 중 “시행에 관하여”를 “시행에”로 한다.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
<p>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충청북도 발전에 기여할 향토인재 양성을 위한 충북학사 및 농촌출신학생 기숙사인 <u>청람재</u>(이하 “학사”라 한다)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</p>	<p>제1조(목적) ----- ----- ----- <u>충북학사 청람재</u>----- ----- -----.</p>
<p>제2조(위치) 충북학사는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<u>버드나루로 125</u>(당산동) 충북미래관 내에 두고 <u>청람재</u>는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목련로 61-7(지북동)에 둔다.</p>	<p>제2조(위치) ----- ----- ----- <u>충북학사 청람재</u>(이하 “학사”라 한다)----- -----.</p>
<p>제3조(기능) 학사의 기능은 다음 각호와 같다.</p> <p>1. · 2. (생략)</p> <p>3. <u>기타</u> 입사생의 복지를 위한 사항</p>	<p>제3조(기능) ----- -----.</p> <p>1. · 2. (현행과 같음)</p> <p>3. <u>그 밖에</u> ----- -----</p>
<p>제6조(운영법인의 책무) ① ~ ③ (생략)</p> <p>④ 운영법인은 이 조례 및 학사 관련 <u>규정에</u> 의한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하여서는 아니된다.</p> <p>⑤ 운영법인이 <u>제2항 내지 제4항</u>을 위반하여 손해를 끼쳤을 때에는 이를 변상하여야 한다.</p>	<p>제6조(운영법인의 책무) ① ~ ③ (현행과 같음)</p> <p>④ ----- ----- <u>규정에 따른</u> ----- -----.</p> <p>⑤ ----- 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----- -----.</p>

제7조(사업승인 등) 운영법인이
다음 각호의 사항을 하고자 할
때에는 사전에 도지사의 승인을
얻어야 한다.

1. ~ 3. (생략)
4. 기타 도지사가 정하는 사항

제8조(감독) ① (생략)

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
또는 검사결과 시정하여야 할
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도지사는
운영법인에게 시정요구를 할 수
있으며 운영법인은 이에 필요한
조치를 취하여야 한다.

③ (생략)

제9조(규칙) 이 조례의 시행에 관
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
정한다.

제7조(사업승인 등) -----

-----.

1. ~ 3. (현행과 같음)
4. 그 밖에 -----

제8조(감독) ① (현행과 같음)

② 제1항에 따른 -----

-----.

③ (현행과 같음)

제9조(규칙) ----- 시행에 ---

-----.

관련규정 발취

□ 재단법인 충북학사 사무국 운영규정

제2조 (용어의 정의)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다음과 같다

5. “장학시설”이라 함은 충북학사 및 충북학사 청람재를 말한다

□ 충북학사 청람재 운영규정

제1조 (목적) 이 규정은 재단법인 충북학사 정관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충북학사 청람재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

제2조 (위치)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

1. “학사”라 함은 충북학사 청람재를 말한다